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담양군의회



“담양의 더 나은 미래

담양군의회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목 차

- 04 인사말씀
- 06 의회연혁
- 08 역대 의장단
- 09 의회조직
- 10 의회현황
- 11 지역별 의원현황
- 12 의원현황
- 13 의원 윤리강령
- 14 상임위원회
- 17 의회의 지위
- 18 의회의 권한
- 19 의회의 운영
- 20 의안의 처리절차
- 21 청원/진정의 처리절차
- 22 청사안내
- 23 의회참여

제9대 하반기 담양군의의회 안내

발행처 담양군의의회

발행인 담양군의의회 의장

주 소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전 화 061-380-3513

팩 스 061-380-3590

홈페이지 <http://www.dycouncil.go.kr>

편 집 의회사무과 홍보팀

※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인사말씀



존경하고 사랑하는 담양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담양군의회 의장 장 명 영입니다.



담양군의회는 1991년 제1대 담양군의회 개원을 시작으로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군민들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매순간 함께하며 써내려간 담양군의회 발자취 모두는 군민 여러분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온 지방자치의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라 할 것입니다.

제9대 후반기 담양군의회는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낮은 자세로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와 희망을 드리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고, 바라는 담양을 만들기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치분권의 확립에 앞장서며,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담양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를 꽃 피우고, 더 나은 담양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9대 후반기 담양군의회 의장 장명영

의회연혁 - 담양군의회가 걸어온 길

1950's

- 1949. 07. 04. 법률 제32호 지방자치법 제정·공포
- 1952. 04. 25. 최초의 지방선거 실시(읍면의회 의원 선거)

1990's

- 1991. 12. 31. 법률 제3410호 지방자치법 개정
- 1991. 03. 26. 제1대 담양군의회 의원 선거
- 선거구 12개(12명)
- 1991. 04. 15. 제1대 담양군의회 개원(임기 4년)
- 1995. 06. 27. 제2대 담양군의회 의원 선거
- 선거구 12개(12명)
- 1995. 07. 13. 제2대 담양군의회 개원(임기 3년)
- 1998. 06. 04. 제3대 담양군의회 의원 선거
- 선거구 12개(12명)
- 1998. 07. 10. 제3대 담양군의회 개원(임기 4년)



2000's

- 2000. 10. 26. 대덕면 선거구 보궐선거
- 2002. 06. 13. 제4대 담양군의회 의원 선거
- 선거구 12개(12명)
- 2002. 07. 08. 제4대 담양군의회 개원(임기 4년)
- 2004. 06. 25. 무정면 선거구 보궐선거
- 2006. 05. 31. 제5대 담양군의회 의원 선거
- 선거구 4개(8명), 비례대표 1명
- 2006. 07. 07. 제5대 담양군의회 개원(임기 4년)



2010's

2010. 06. 06. 제6대 담양군의회 의원 선거
- 선거구 4개(8명), 비례대표 1명

2010. 07. 07. 제6대 담양군의회 개원(임기 4년)



2014. 06. 04. 제7대 담양군의회 의원 선거
- 선거구 4개(8명), 비례대표 1명

2014. 07. 01. 제7대 담양군의회 개원(임기 4년)



2018. 06. 13. 제8대 담양군의회 의원 선거
- 선거구 4개(8명), 비례대표 1명

2018. 07. 09. 제8대 담양군의회 개원(임기 4년)



202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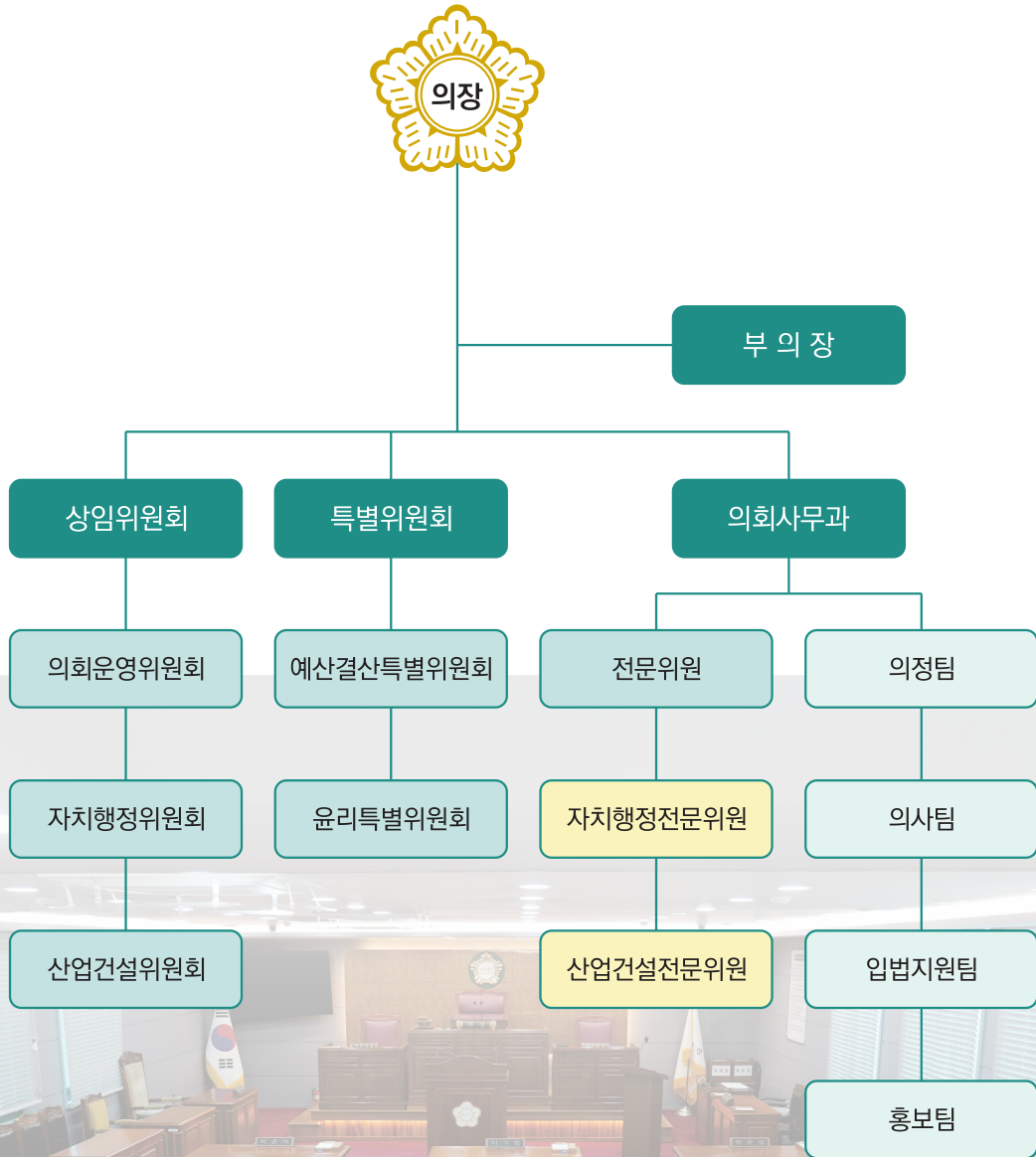
2022. 06. 01. 제9대 담양군의회 의원 선거
- 선거구 4개(8명), 비례대표 1명

2022. 07. 04. 제9대 담양군의회 개원(임기 4년)



역대 의장단

 제1회	전반기	의장 최 성 길 / 최 창 옥	부의장 최 창 옥 / 김 권 식
	후반기	의장 강 영 수	부의장 양 삼 기
 제2회	전반기	의장 강 영 수	부의장 노 상 철
	후반기	의장 양 삼 기	부의장 이 정 구
 제3회	전반기	의장 배 기 술	부의장 신 동 옥
	후반기	의장 조 인 진	부의장 박 춘 식
 제4회	전반기	의장 박 춘 식	부의장 정 금 연
	후반기	의장 박 춘 식	부의장 정 금 연
 제5회	전반기	의장 최 화 삼	부의장 전 정 철
	후반기	의장 양 대 수	부의장 윤 영 선
 제6회	전반기	의장 전 정 철	부의장 김 현 동
	후반기	의장 전 정 철	부의장 조 홍 천
 제7회	전반기	의장 윤 영 선	부의장 추 연 옥
	후반기	의장 김 기 성	부의장 이 규 현
 제8회	전반기	의장 김 정 오	부의장 정 철 원
	후반기	의장 김 정 오	부의장 이 정 옥
 제9회	전반기	의장 최 용 만	부의장 박 준 엽
	후반기	의장 정 철 원 / 장 명 원	부의장 박 은 서



의원 현황

- ◎ 의원정수 : 9명(선거구수 4)
- ◎ 의 장 단 : 의장 1명, 부의장 1명
- ◎ 상임위원회 수 : 3

의 장



장 명 영
봉산,수북,대전

부의장



박 은 서
비례대표

의회운영위원회



조 관 훈
봉산,수북,대전

자치행정위원회



이 기 범
담양읍

산업건설위원회



최 현 동
고서,가사문학,창평,대덕

의 원



최 용 만
담양읍

의 원



박 준 엽
무정,금성,용,월산

의 원



노 대 현
고서,가사문학,창평,대덕

지역별 의원현황



의원 현황

- ◎ 의원정수 : 9명(선거구수 4)
- ◎ 의 장 단 : 의장 1명, 부의장 1명
- ◎ 상임위원회 수 : 3

의 장



장 명 영
봉산,수북,대전

부의장



박 은 서
비례대표

의회운영위원회



조 관 훈
봉산,수북,대전

자치행정위원회



이 기 범
담양읍

산업건설위원회



최 현 동
고서,가사문학,창평,대덕

의 원



최 용 만
담양읍

의 원



박 준 엽
무정,금성,용,월산

의 원



노 대 현
고서,가사문학,창평,대덕



우리 담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주권자인 군민으로부터 군의회 의정을 위임받은 군민의 대표로서 도덕적 양심에 따라 군의정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군민의 신뢰 속에 군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의원의 책무와 의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을 함양하여 전통적인 예절을 준수하고, 군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뜻을 성실하게 대변한다.
2.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자유와 정의,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선의 정신으로 사익을 버리고 군의정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3.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에 앞장선다.
4. 우리는 의원 상호 간에 서로 존경하며 진실하고 진지한 토론과 적법절차의 합리적인 의정운영으로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한다.
5. 우리는 공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군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지는 민주의정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앞서가는 선진의회를 만들어 갑니다.

의회운영,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의회사무과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며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 관 훈 위원장
다 선거구 [봉산,수북,대전]



박 준 엽 간사
나 선거구 [무정,금성,용,월산]



박 은 서 위원
비례대표



이 기 범 위원
가 선거구 [담양읍]



최 현 동 위원
라 선거구 [고서,가사문학,창평,대덕]

소 관 사 항

담 양 군 의 회

-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
-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의 회 사 무 과

- 의정팀, 의사팀, 입법지원팀, 홍보팀



자치행정위원회

담양군의 미래를 그려갑니다.

군민의 편익증진과 권리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사회복지, 그리고 여성 및 가족정책 분야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 범 위원장
가 선거구 [담양읍]



박 은 서 간사
비례대표



박 준 엽 위원
나 선거구 [무정,금성,용,월산]



노 대 현 위원
라 선거구 [고서,가사문학,창평,대덕]

소 관 사 항

보좌기관	· 기획예산실	· 참여소통실
행정국	· 행정과 · 주민복지과 · 문화체육과	· 재무과 · 향촌복지과 · 문화체육과
산업안전국	· 민원과	
직속기관·사업소	· 보건소	· 공공시설사업소

상임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살기 좋고 편안한 도시를 만듭니다.

도시계획과 주거환경 개선, 환경 보전 등 담양을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건설행정 및 교통행정, 환경과 경제 분야 등을 감시 감독,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 현 동 위원장
라 선거구 [고서,가사문학,창평,대덕]



조 관 훈 간사
다 선거구 [봉산,수북,대전]



최 용 만 위원
가 선거구 [담양읍]

소 관 사 항

미 래 성 장 국	· 경제교통과 · 건 설 과 · 산림정원과	· 공간재생과 · 도 시 과 · 투자유치단
산 업 건 설 국	· 농업유통과 · 재난안전과	· 축산원예과 · 환 경 과
직속기관·사업소	· 농업기술센터	· 물순환사업소



위원의 지위

주민대의기관

☞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합니다.

의결기관

☞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입법기관

☞ 자치단체의 법령인 자치법규를 제정합니다.

감시기관

☞ 집행기관이 합리적이고, 적법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감시합니다.

의회의 권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결권,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감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다.

◎ 의결권

-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 징수
- 기금의 설치, 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결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자율권

- 임시회 소집, 개회·휴회·폐회, 회기 결정
-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 관련 규칙 제정
- 위원회 구성 및 의안 발의권
- 의장,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의원의 자격, 징계 결정권

◎ 청원수리권

-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함.
-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이송·처리하게 함.

◎ 군정질문과 자료요구권

- 군정전반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의 처리상황이나 향후계획 등의 대하여 소견을 묻고 답변을 들을 수 있음.
-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군수에게 요구



집회와 회기

◎ 회기일수

-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초과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 정례회 : 연 제1, 2차 정례회 2회를 합하여 46일 이내
- 임시회 : 매 회기별 20일 이내

◎ 정례회

- 연 2회 개최하고, 회의일수는 합하여 총 50일 이내로 함.
- 제1차 정례회 : 매년 6월
- 제2차 정례회 : 매년 11~12월

◎ 임시회

-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사고로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할 수 있음.
-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전에 공고.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본회의

- 모든 의원으로 구성된 회의로, 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됨.
- 의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만약 가부동수일 경우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간주함.

◎ 상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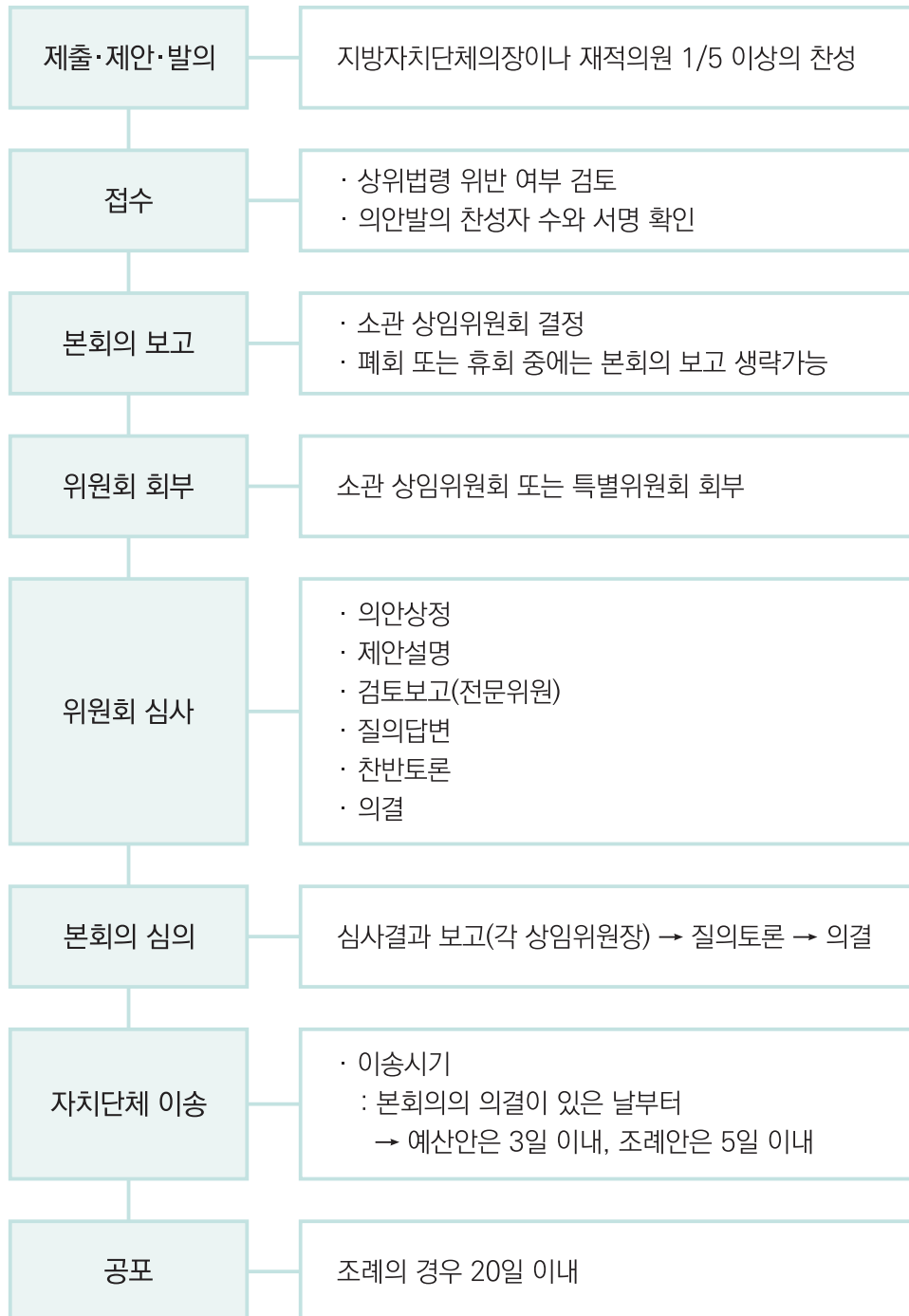
- 본회의에서의 의안 심의에 앞서 예비적으로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함.
- 회부된 소관 사항의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함.



의안의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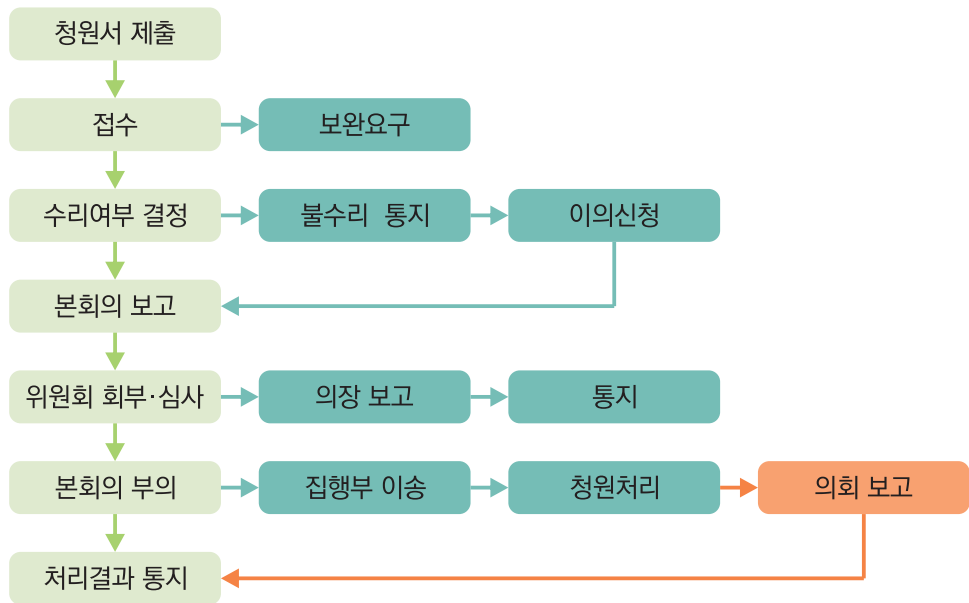
조례안 등 일반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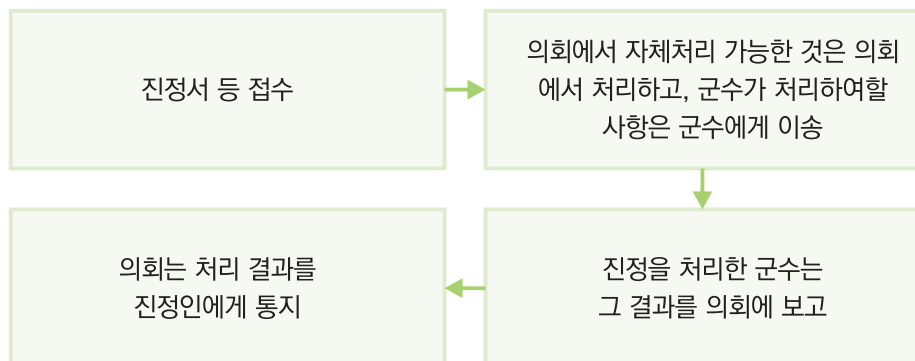
청원

주민이 지방의회에 일정한 의견, 희망 또는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그 피해 구제,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기타 공공제도 또는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서 담양군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 서명, 날인 후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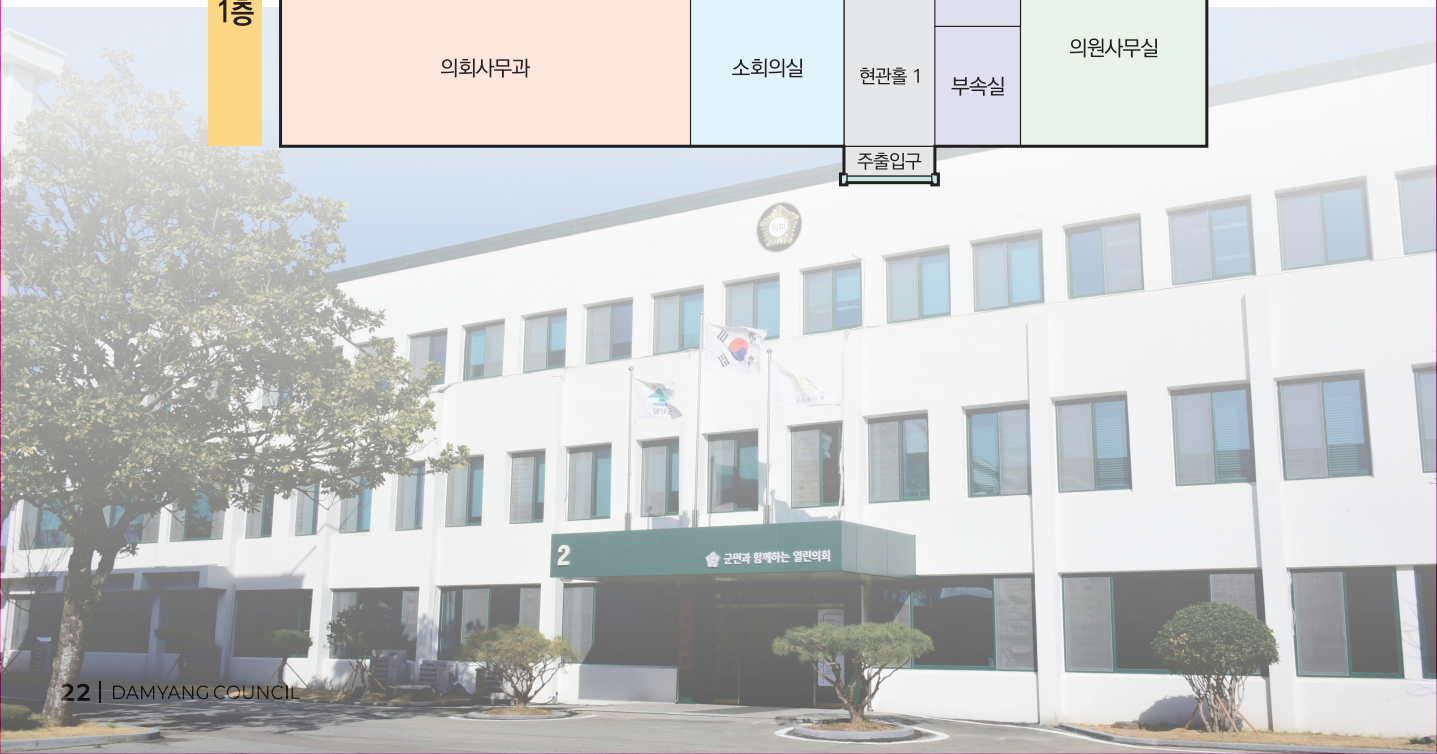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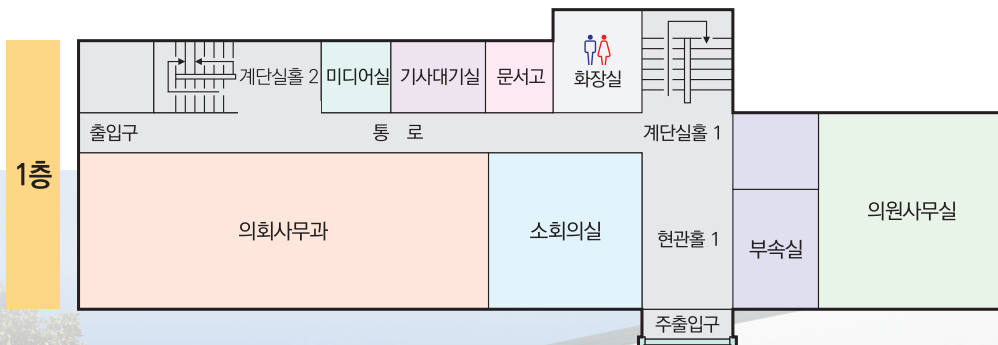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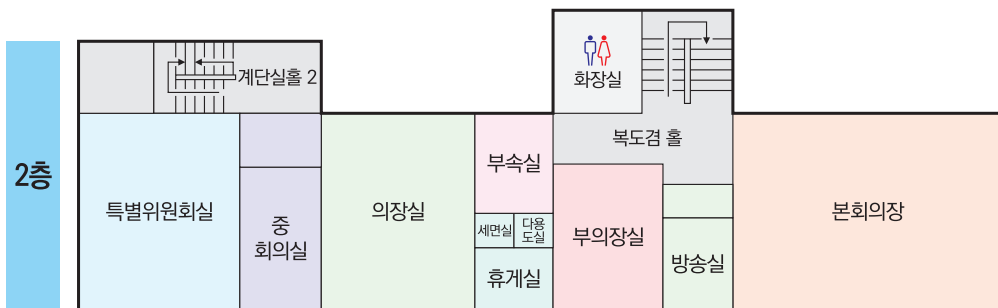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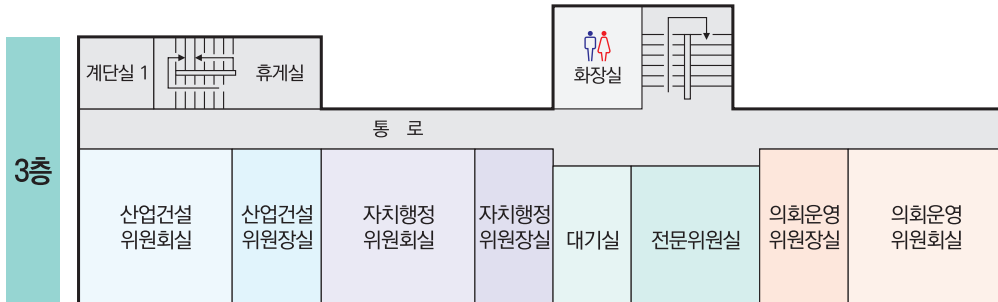


진정

주민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또는 건의나 희망을 표시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의견서, 호소문 등 일정한 양식에 제약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



청사안내





담양군의회 홈페이지

군민 여러분의 제안 사항이나 의견을 듣기 위해 홈페이지에 '의회에 바란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주소창에

<http://dycouncil.go.kr>

첫화면 > 참여마당 > 의회에 바란다

◎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창에

<http://dycouncil.go.kr>

첫화면 > 참여마당 > 의회에 바란다

▼ 의회에 바란다.



담양군의회 방청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 속에서 성숙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참여가 더 없이 필요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청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회시설 견학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담양군의회 SNS

유튜브/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통해 담양군의회 주요소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담양군의회
<http://dycouncil.go.kr>